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험 문항 거래 등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90호)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86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각종 시험 문항 제공 요청 금지 등 금지행위 규정 신설	3
2.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11

I. 제안경위

1. 김문수 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3. 23.

다. 회부연월일 : 2026. 3. 24.

2. 조정훈 의원안

가. 발 의 자 : 조정훈 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4. 13.

다. 회부연월일 : 2026.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문수 의원안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2. 조정훈 의원안

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된 공교육 교사들과 달리 학원 강사는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조직적 거래에도 학원 강사 개인의 사법 재판만 진행 중이며, 학원설립·운영자 등 법인의 정당한 책임은 회피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각종 시험 문항 제공 요청 금지 등 금지행위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및 강사가 각종 시험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①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②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습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③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재 등을 시험에 반영되도록 청탁·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 문 수 의 원 안	조 정 훈 의 원 안
<u>제13조의3(금지행위) ①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 강사는 학원의 운영 또는 교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출제·검토·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출제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제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u>제13조의3(금지행위) ①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 강사는 학원의 운영 또는 교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시험(이하 이 조에서 “학교시험등”이라 한다)의 출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출제자”라 한다)에게 출제자 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학교시험등의 문항·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 학원의 교재 등 교습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3.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등 교습자료 또는 그에 관한 정보를 출제자등에게 제공하여 해당 교습자료의 문항이나 정보가 시험에 반영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학교시험 등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 학원의 교재 또는 교습자료로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3조¹⁾는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공정한 교육을 도모하고, 교원들이 과외교습을 통해 시험 문제 유출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교육 현장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러한 학원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명 사교육 강사 등이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매수하는 사례²⁾가 발생하고 있음.

- 참고로,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2025.2.)결과,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 및 학원강사에게 문항을 제작·공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어 교원·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음. 이후 경찰의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유명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문항 거래 사례 등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³⁾중임.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⁴⁾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3조의2⁵⁾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임혜린, “현직 교사에 최대 1.8억 줬다... 수능 문항 거래 실체”, 서울경제, 2026.1.14.

3) 이 중 유명 사교육 강사 등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대비 문항을 제공받고 금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6. 해당 금품이 문항 거래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게 되며,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제작·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현행 제재수단은 문항 제공행위 자체를 직접적인 금지행위 또는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 또는 신분상 제재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 따라서 교사와 달리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교원에게 시험의 문항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해당 문항을 활용하여 교재·교습자료 등에 활용하는 등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학원법상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고,

학원 강사 등이 시험 문항을 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청탁금지법,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더라도 여전히 학원에서 교습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 및 강사가 각종 시험의 문항 제공 등의 행위를 요청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원법상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시험(이른바 ‘내신시험’) 및 대학 입시를 위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공정한 과정을 거친 입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학원 강사 등의 시험 문항에 관한 정보 거래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두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방식과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범위를 살펴보면, 김문수 의원안은 ① 각종 시험의 출제·검토·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청탁·권유하는 행위, ② 이에 따라 제공받은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 학원의 교재 등 교습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③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등 교습자료 또는 관련 정보를 출제자등에게 제공하여 해당 내용이 시험에 반영되도록 청탁·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조정훈 의원안은 ① 각종 시험의 출제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시험 문항·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와 ② 이에 따라 제공받은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습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김문수 의원안은 조정훈 의원안과 비교하여 시험 관련 업무 수행자의 범위를 출제자뿐만 아니라 검토·관리 업무 수행자까지 포함하고, 학원 교습자료의 문항·정보를 실제 시험에 반영하도록 청탁·권유하는 이른바 역방향의 문항 거래 행위까지 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개정안의 금지행위 및 직무배제조항 비교>

	김문수 의원안	조정훈 의원안
금지 행위	1. 각종 시험의 <u>출제·검토·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u> 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	1. 각종 시험의 <u>출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u> 에게 출제자 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시험 등의 문항·정보 제공 요청
	2. 제공받은 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습자료 제작·배포 및 교습행위	2. 제공받은 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습자료 제작·배포 및 교습행위
	3. 학원 교습자료의 문항·정보를 <u>시험에 반영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u>	
직무 배제 조항	X	금지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직무배제

□ 둘째, 조정훈 의원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의 금지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조정훈 의원안 제13조의3제2항>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는 금지행위를 한 임직원 또는 강사가 계속하여 학원의 운영 또는 교습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직무배제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요건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한 위반사실의 인지부터 수사 개시·기소 등 객관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까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직무배제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요건과 시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육공무원법」⁶⁾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나 일정한 비

6) 「교육공무원법」 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위행위로 조사·수사 중인 경우 등 직위해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시험의 범위를 살펴보면, 두 개정안 모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시험을 포함하고 있으나, 김문수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시험’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문수 의원안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내신시험이나 대학 수능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 변호사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각종 시험도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반면, 조정훈 의원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만 하는 것으로, 기존 법체계 내의 처벌규정에 의해 이미 교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안 제13조의3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①학원 등록 말소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③직무배제 의무를 하지 않은 학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조정훈 의원안).

김 문 수 의 원 안	조 정 훈 의 원 안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6의2.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다만,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 12.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u>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2. (생략) <u>2의2.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u> 3. 4. (생략) ② ③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u>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자</u> 4. ~ 10.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안 제13조의3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교습 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문항 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임직원 및 강사의 개인적인 법 위반행위를 사유로 학원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처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원설립·운영자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벌칙과 관련하여, 김문수 의원안은 금지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비례하여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벌칙의 변화 >

구분	현행	개정안
징역형	1년 이하	1년 이하 (동일)
벌금형	1천만원 이하	위반이익이 1천만원 초과 시 → 위반이익의 5배 이하

이와 같은 배수벌금형은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⁷⁾에서도 활용되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고 있음.

다만, 시험 문항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문항 판매대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반면, 제공받은 문항을 교재 제작이나 교습에 활용한 경우에는 교재 판매수입이나 수강료 중 어느 범위까지를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음.

특히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별도의 벌금 상한을 두지 않을 경우 벌금액의 산정 및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문제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조정훈 의원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금지행위를 한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를 지체 없이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직무배제 의무의 성립 여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배제의 요건 및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불분명해질 수 있음. 따라서 직무배제 의무의 요건과 시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8) 헌법재판소는 2022헌가6 결정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그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별도의 벌금 상한을 두지 않은 배수벌금형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 다만, 이러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벌금 상한을 정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음.

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관계기관 의견으로 교육부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